

◆ D-55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1) 출근중 재해

- 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6.4.26.96누2026)
- ② 약 7개월간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그 근로자의 통상근무지에 해당되므로 공사 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수 없고, 본사에서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서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가던중에 발생된 재해는 단순한 통근재해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아파트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보도 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판 1996.11.19. 96구24264)

(2) 출장중 재해

- ① 은행외환계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자리에 참석하고 식사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8.1.20. 97다39087)

(3) 행사중 재해

- ①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후 망인의 귀가행위도 임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6.6.14. 96누3555)
- ② 점심시간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6.8.23. 95누14633)

③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대판 1997.6.10. 96누13855)

(4) 타인폭력에 의한 재해

-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대판 1995.1.24.94누8587)

(5) 사업주 특명에 의한 업무수행중 재해

- 사장의 교통사고 뒷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일과후 회사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 내지는 연장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서울고판 1993. 13. 92나 48750)

(6) 사적인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①사업주의 지시나 승낙없이 업무시간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대판 1994.8.23. 94누3841)

② 작업시간 이후에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후 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개인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갑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갑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이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할수 없다.

(대판 1994.10.25. 94누9498)

③ 사업주 및 원청회사 직원들과 회식 및 술을 마신후 숙소로 돌아오던중 23:00시경에 소변을 보기위해 인근 타 건설현장 후면으로 가다가 옹벽환기구에 빠지면서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피재자 자신이 임의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 고 볼 수 없다. (산심위 98-1588. '98.11.26. 기각)

④ ○○건설(주)소속 근로자가 자재문제로 일시휴업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으려 오라는 작업반장의 연락을 받고 노임을 수령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로 가던중에 3-4m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노임을 수령하러 가는 행위는 단지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적행위일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부수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98-1424호, '98.11.5기각)

⑤ 경비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동료직원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보상 1254-1'6604, '85.9.10)

(7) 노조업무중 재해

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6.6.28. 96다12733)

② 노동쟁의중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이탈행위로 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외재해이다.

(보상 15262. '87.9.19)

③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단계에 들어 간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대판 1998.12.8. 98두14006)

④ 노동조합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1997.3.28, 96누16179)

(8) 기존증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

- ① 치료종결당시 남아있던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을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4.11.8. 93누21927)
- ② 기존증을 갖고 있는 피재자가 3m높이에서 추락하여 진신에 타박상을 입고 후송된 정황으로 볼때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기존증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 업무상재해로 승인됨.(재결 97-675호 참조)
- ③ 허리에 3-5요추의 골만증 및 협착증이 있던 재해자가 샤프트해제작업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건물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밧줄의 이음새가 건물돌출부위에 걸리면 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음이 명백하다면 기존질병과 무관한 새로운 상병명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여야 함. (재결 97-135호 참조)
- ④ 기존질환인 “골다공증”이 있는자가 넘어지면서 4-5요추간판탈출증, 다발성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가 기존증을 급격히 증악시킨 것으로 산재요양을 대상이 됨. (재결 97-1659호 참조)

(9) 업무상질병

- ① 과로사(사인미상) - 사망의 선행 및 중간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만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 뿐인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과중한업무로 보여지지 않으며 그 사망원인도 알수 없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94.11.11. 94누10580)

- ② 과로사(간암) -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은 업무라도 간기능이 악화된 사람이 그 업무로 인하여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재심사위 1999.1.21.)

- ③ 과로사(뇌지주막하출혈) -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5.3.14. 94누7935)

④ 과로사(간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인 음주가 요청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 노무담당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 (대판 1997.5.28. 97누10)

⑤ 과로사(뇌출혈) - 회사에 입사하여 11년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강도나 근무시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주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일 3교대 또는 2교대 근무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판 1996.11.8. 96구11886)

⑥ 과로사(신부전증) -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됨으로서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판 1998.9.17. 97구51270)

⑦ 과로사(과실여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 ·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1994.10.28. 94다33491)

⑧ 과로사(입증책임) -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4.6.28. 94누2565)